

「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(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(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))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7월 1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7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7월 24일

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 종 배

나. 제안이유

○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

도립공원 내 시설부지(대관정, 등산로, 운동시설, 편의시설)로
활용중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정비, 보강하고 반복
적인 민원(시설물 철거 또는 토지매입)을 해소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

- 위 치 : 형곡동 산87-1
- 규 모 : 입야 57,078㎡ 중 약 20,000㎡(측량 후 최종 결정)
- 총사업비 : 180백만원
- 기준가격 : 61백만원 정도(공시지가 3,010원/㎡)
- 주요시설 : 정자(대관정), 등산로, 운동시설, 편의시설
- 추진현황
 - 시설부지 토지매입 계획(안) 수립 : '23. 6월
 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'23. 8월
- 향후추진계획
 -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: '24. 7월
 - 분할측량 및 토지감정평가 : '25. 1월
 - 소유권 이전 등기 : '25. 2월

라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| 구 분 | | 건수 | 수량 | 금액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|
| 취득 | 계 | 1 | 20,000 | 61 |
| | 1.매입 | 1 | 20,000 | 61 |
| | 2.교환 으로 취득 | | | |
| | 3.기타 취득 | | | |

취득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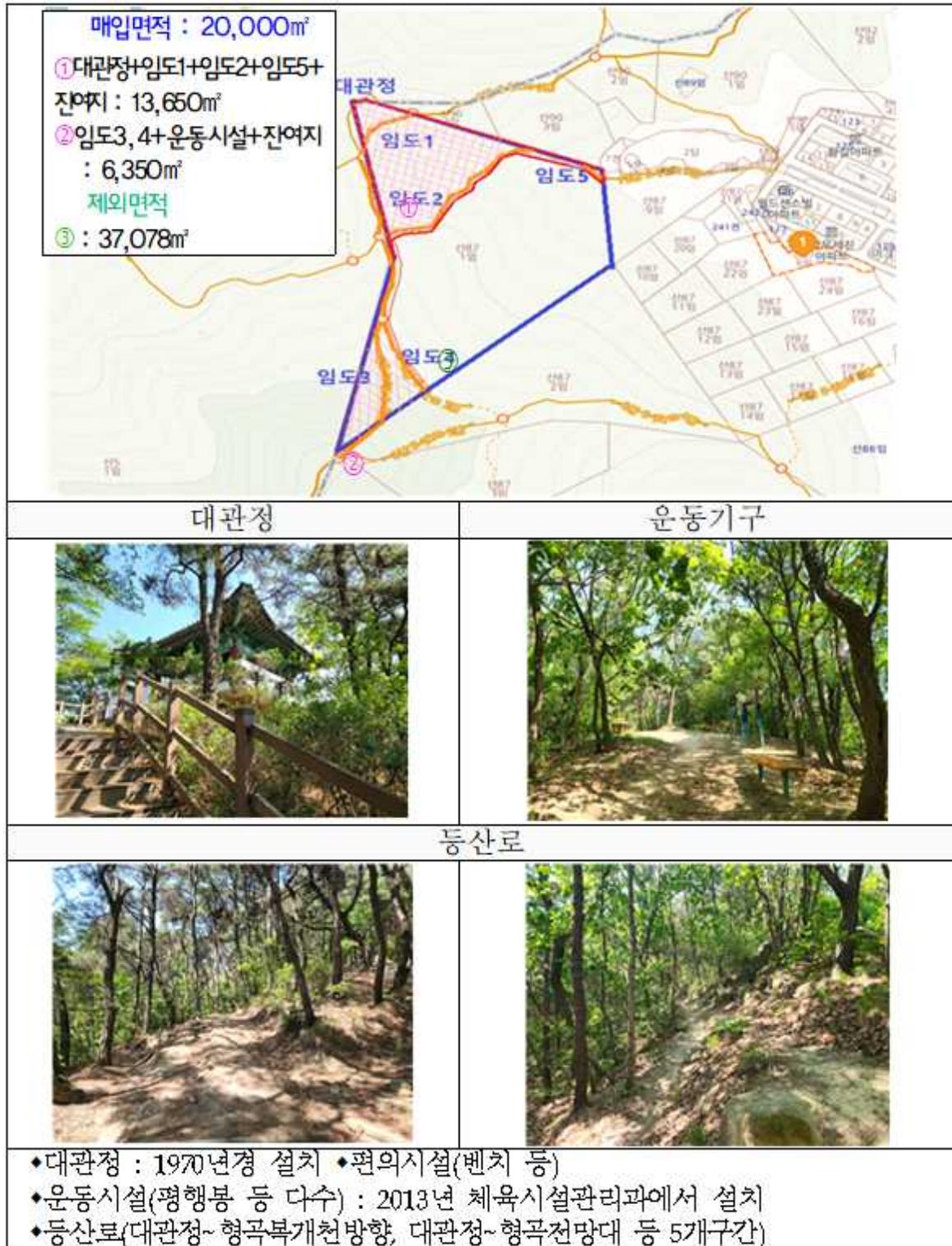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m², 백만원)

| 연번 | 재 산 의 표 시 | | | 추정 가액 | 취득 시기 | 사 유 | 소유자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구분 | 소 재 지 | 수량 | | | | | |
| 계 | | | 20,000 | 61 | | | | |
| 1 | 토지 | 형곡동 산87-1 | 20,000 | 61 | 2025년 | 시설부지 매입 | 김명자 외 4인 | 매입 |
| | | 이하여백 | | | | | | |

위 치 도

□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

○ 소재지 : 형곡동 산87-1

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도립공원 내 시설부지(대관정, 등산로, 운동시설, 편의시설)로 활용중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정비, 보강하고 반복적인 민원(시설물 철거 또는 토지매입)을 해소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추후 집행기관에서는 도립공원 내 시설 보존 및 등산로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보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해당 관리계획안은 당시 지역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임.
- 주민들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협의와 공감을 얻지 못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,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뿐만

아니라 관련 의원들과 모두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.

- 또한,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일으킨 문제이므로, 추후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방안을 산림과에서 마련해야할 것임.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시설부지 외에 등산로까지 매입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음. 다른 지역의 등산로도 매입 요구가 있을 시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